

2025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5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7. 1.

충청남도지사

1. 지정개요

- 사업명: 2025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- 지정기간: 3년
 - 단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
- 지원내용
 -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용자 및 이자보전
 -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,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
 -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 지원 등
 - 유통관로 지원 및 인증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홍보 등

2. 신청개요

- 신청기간: 2025. 7. 1.(화) ~ 2025. 7. 23.(수) 18:00까지
- 신청방법: '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' 온라인 신청
 - <https://www.seis.or.kr> 회원가입 후 '지정관리'에서 지정 신청서 등록



※ 단,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등록해야 하며,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을 불인정하고,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

○ 신청유형

구 분	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	취약계층 고용	수입 또는 지출 (전체 수입 또는 지출 대비)	비고
① 일자리제공형	-	30% 이상	-	
② 사회서비스 제공형	30% 이상	-	-	
③ 지역사회 공헌형	가	20% (또는) 20%	-	시군범위 내
	나	-	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입 또는 지출 40% 이상	
	다	-	지역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조직에 대해 컨설팅, 마케팅 등 지원 수입 또는 지출 40% 이상	
④ 혼합형	20% (동시)	20%	-	
⑤ 기타(창의혁신)형	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며,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(사업의 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는 동 유형으로 불인정)			

3. 신청 자격 ※ [붙임1] 참고

- 신청자격: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단체 등
 - ①조직형태, ②사회적 목적 실현, ③영업활동 수행, ④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,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, ⑥교육이수
 - ※ ‘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’과 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’ 중복 지정할 수 없음
 - ※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기업 가산점 부여 등 우대

○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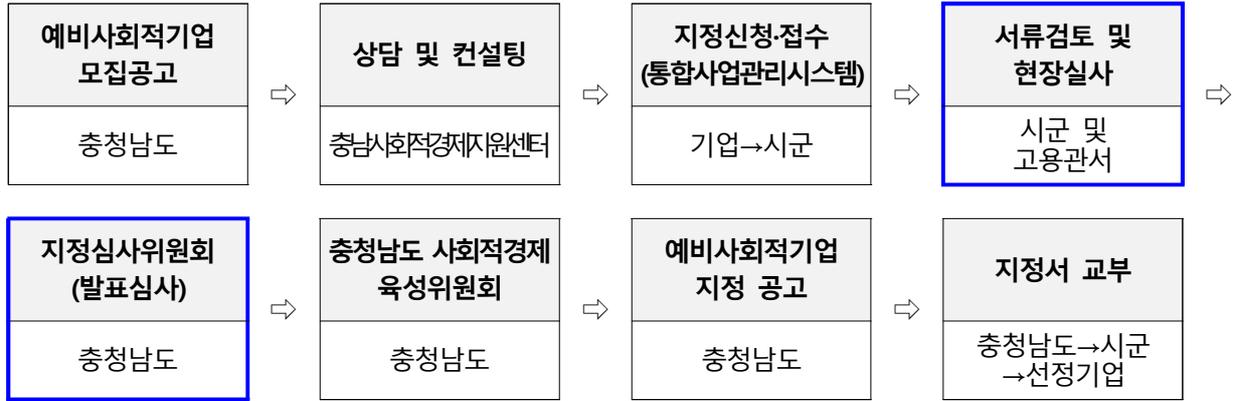
-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며,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야 지원 가능
- 온라인 신청 서류(첨부 포함)는 접수 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누락·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의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서 반려
-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, 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의함
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 일체 비공개

4. 제출 서류 ※ [별지서식] 참고

연번	서류명	필수여부	비고
1	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	필수	<별지 제1호>
2	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	필수	<별지 제2호>
3	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이력서, 임대차 계약서,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, 마을기업지정서 등 -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제출	필수	
4	사회적 목적 실현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실적이 있는 경우	<별지 제2호의2> ~ <별지 제2호의6>
5	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, 완납증명서 등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 구비서류 간소화 메뉴로 제출, 유급근로자 명부 입력 (근로계약서, 취약계층 증빙자료 등 첨부) - 사회적 목적 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(가)인 경우 유급근로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필요	일자리 제공형 필수	<별지 제2호의7>
6	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) - 실적이 있는 경우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 (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) - 증빙서류 예시: 매출 계정별 원장(필요 시 증빙서류 첨부가능) ※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	필수	표준재무제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부가세신고내역, 거래처별합계표, 납세증명 등
7	정관·규약(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*인 경우) *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회사,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 회사법인, 「협동조합기본법」협동조합, 「민법」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※ 정관, 규약은 반드시 '공증'을 받아야 인정 ※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인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·청산 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의 2/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	필수	
8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	필수	<별지 제6호>
9	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	필수	<별지 제2호의8>
10	사회적기업 기본과정,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-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- 사회적기업포털(www.seis.or.kr) '소셜클래스' 메뉴에서 '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(3시간)' 수강 또는 - 지방자치단체,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'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' 수료증	필수	

5. 지정 절차

○ 지정절차



○ 결과통보: 도 홈페이지 선정공고 및 관할 소재지 시군 통보

6. 지정 설명회 개최

- 일 시: 2025. 7. 8.(화) 14:00 /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대회의실
- 참석대상: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
- 주요내용: 신청 자격, 제출서류, 지정 절차 등 안내 및 질의응답

7.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

○ 준수사항

- 지정요건 유지
-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(지정 후 3개월 이내)
- 매년 5월 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
 - * 미제출 시 불이익: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
-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

○ 지정취소

-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
 - ※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~500%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
-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

8. 향후 심사계획

- 심사일자 : 2025. 8. 18.(월) ~ 8. 22.(금) 중 1일 /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(예정)
- 심사방법 : 신청기업의 사업설명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
- 주요 심사내용
 -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
 -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한지 여부

9. 문의처

- 문의처
 -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(☎ 041-635-3320)
 -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, 관할 기초자치단체 문의
- ※ (문의)

구 분	기 관	전화번호
공고, 심사, 지정	충청남도 경제정책과	041-635-3320
상담 및 컨설팅 (지원기관)	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	041-456-8134 (8132, 8133)
시스템 문의 (www.seis.or.kr)	통합사업관리시스템 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	1661-4006

※ (접수) 시군 담당부서

담당부서 및 연락처					
기 관	부 서	전화번호	기 관	부 서	전화번호
천안시	일자리경제과	041)521-5612	금산군	경제과	041)750-3023
공주시	경제과	041)840-8314	부여군	경제교통과	041)830-2264
보령시	지역경제과	041)930-3726	서천군	경제진흥과	041)950-4120
아산시	일자리경제과	041)530-6049	청양군	사회적경제과	041)940-4073
서산시	일자리경제과	041)660-2590	홍성군	경제정책과	041)630-1355
논산시	지역경제과	041)746-6027	예산군	경제과	041)339-7283
계룡시	경제산업과	042)840-2494	태안군	경제진흥과	041)670-2708
당진시	기업육성과	041)350-4572			

1. 신청자격

○ 신청자격: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단체 등

① 조직형태

-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,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,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법인 등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·미술관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
-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② 사회적 목적 실현
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(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)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
- *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
- 단,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 **괜찮은 일자리*** 기준을 충족해야 함(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준용함) * 최저임금 이상, 주 15시간 이상, 근로기간 미지정 계약
- *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,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이내('25. 4.~'25. 6.)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

【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】

- (1) 사회서비스제공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 -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
- (2) 일자리제공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 -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
- (3) 지역사회공헌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 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지역취약계층)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
 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 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, 마케팅,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- (4) 혼합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
- (5) 기타(창의·혁신)형: 그 밖의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
 -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

③ 영업활동 수행

- 신청일 전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·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 - *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
- 단,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 - *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

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
-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
【세부지정요건】

□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 회사법인, 일반 협동조합,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가. 상법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-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(임금인상, 복리후생비, 성과급 등)
-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
-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

나.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.

다.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.

- (1) 정관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
 - (2)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.

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, 교육 이수
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,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- 사회적기업포털 소셜클래스 내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(3시간)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

【세부지정요건】

□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

- 적용기준: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(위반사항 해소 포함)로 판단

※ 단 아래와 같이 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만 신청 가능

【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제한 사항】

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(지정공고일)부터 1년간(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) 신청 제한

※ 지역형·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포함

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 인·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진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·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

*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

-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
-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
-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
-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임원·근로자 등 구성원,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

□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

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(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및 지자체,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결과)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

<별지 제1호서식>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60일
------	-----	-----------

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

① 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② 대 표 자	
③ 연 락 처	☎ (FAX.)		④ 사업자등록번호	
⑤ 소 재 지				
⑥ 조 직 형 태	1.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민법상 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한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자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민간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생활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·영어조합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·어업회사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법인, 비영리단체 2.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단체 등			
⑦ 지 정 유 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㉓[], ㉔[], ㉕[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창의·혁신)형			
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(A)	명	취약계층 근로자수(B)		명
		취약계층 고용비율(B/A)		%
⑨ 주된 사업내용				
⑩ 업종				
⑪ 사업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·예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산림 보전 및 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사 간병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

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구비서류	1.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[별지 제2호서식] 3.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별지 제2호의2~제2호의6서식) (해당기업만 제출) 4. 유급근로자 명부[별지 제2호의7서식] (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) ※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(4대보험),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,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. 사업자등록증명, 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 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세신고내역, 거래처별발행계표, 납세증명)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) 6. 공증받은 정관·규약 등 7.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8.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[별지 제2호의8서식] 9.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0.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(예비)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제출 11.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
------	--

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

◆ 기업개요

기업명 (기관명)		대표자	
소재지			
연혁			

◆ 인증요건 충족계획

사회적 목적 유형 신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㉓[], ㉔[], ㉕[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창의·혁신)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
조직 형태	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시 조직형태 -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
근로자 고용 계획	유급근로자 고용 계획(정규직 00명 등)
의사결정 구조	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- 이사회(운영위원회) 등 운영 계획
정규약관	정관(규약) 제·개정 계획 - 의사결정구조,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(개정) 계획

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1. 사업 목적 (사업의 필요성)	1-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(소셜미션) :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(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) 1-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(사업필요성)
2. 사업 내용 (영업수입 확보방안)	2-1 구체적 사업내용 2-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-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-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-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

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<p>3. 사업 역량</p>	<p>3-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: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</p> <p>3-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: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</p> <p>3-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: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: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</p>
<p>4. 사업 목표</p>	<p>4-1 연차별 매출규모</p> <p>4-2 고용창출 계획</p> <p>4-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</p> <p>4-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</p>

◆ 지정 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<p>1년차</p>	<p>(예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장(사업시설) 확보 및 인력 확충
<p>2년차</p>	<p>(예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- 사업장(지점) 추가 확보 -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
<p>3년차</p>	<p>(예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

◆ 기타 추진계획

연계기업,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

*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(필요 시 별지 작성)

<별지 제2호의2서식>

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		
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		취약계층 수혜자(B)		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
	명			명		%
취약계층 수혜자	일련번호	이름	생년월일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	
				※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	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<별지 제2호의4서식>

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				
사업지역	()시/도 ()시/군/구							
지역 사회 공헌형 ㉓	일자리 제공	전체 근로자(A)			지역취약계층 근로자(B)	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		
		명			명	%		
	사회서비스 제공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		지역취약계층 수혜자(B)	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		
		명			명	%		
	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	구분	연번	성명	생년월일	해당 취약계층		
		근 로 자						
		수 혜 자						
		지역자원 연계현황	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 활용					
지역주민의 소득·일자리 증대								
지역 사회 공헌형 ㉔	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	해당분야 수입(A)	전체 수입(B)	A/B	해당분야 지출(C)	전체 지출(D)	C/D	
				%			%	
지역 사회 공헌형 ㉕	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	해당분야 수입(A)	전체 수입(B)	A/B	해당분야 지출(C)	전체 지출(D)	C/D	
				%			%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3호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구비서류	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※ 비고

1. "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"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
<별지 제2호의5서식>

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		
일자리 제공	전체 근로자(A)		취약계층 근로자(B)		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	
	명		명		%	
사회서비스 제공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	취약계층 수혜자(B)		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	
	명		명		%	
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	일련번호	이름	생년월일	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
※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					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 년 월 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)

<별지 제2호의6서식>

기타(창의·혁신)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<p>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</p>	
<p>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(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)</p>	<p>-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</p> <p>- 관련 사업 추진 실적</p>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<p>구비서류</p>	<p>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p>	<p>수수료 없음</p>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

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

1. 「근로기준법」
2. 「최저임금법」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4. 「임금채권보장법」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
6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7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8.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9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
10. 「근로복지기본법」
11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12.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3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14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15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6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17.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18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)
19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(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)

